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군포에덴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명	군포에덴요양원	설치일자	2018.07.24
급여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37명
대표자	윤인상	협력의료	원광대병원, 지샘병원 등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4번길 11, 2층 군포에덴요양원(당정동, 유영타운)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3,500 원 (1식)	
	간식비	1,500 원 (1일)	
	상급침실 비용	1인실 10,000원, 2인실 5,000원(1박 기준)	
시설규모	건물면적 624.98㎡ , 연면적 4,762.29㎡		

시설급여	-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며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함으로써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의료서비스	-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특별보호	-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계약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 한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계약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하도록 한다.

*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37명으로 한다.

*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 입소 모집 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계약 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② 계약만료 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이용계약은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될 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입소보호 이용 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며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계약서를 각각 보관한다.
-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급여비용/이용료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 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4,240	78,150	73,800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일 10,000원 (2인실 전환시 5,000원)		
	식재료비(1식)	3,500원 (1일 3식)		
	간식비(1회)	1,500원(1일 1회)		
	이/미용료등	무료 (개인 출장 요청시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 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8% 12%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총 계			2,527,200	2,344,500	2,214,0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021,760	1,875,600	1,771,200
	요양급여비용(80%)		2,021,760	1,875,600	1,771,20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65,4400	828,900	802,800
	요양급여비용(20%)		505,440	468,900	442,800
	비급여 항 목	식사재료비	@₩3,500 * 3 * 30 = ₩345,000		
		간식비	@₩1,500 * 1 * 30 = ₩45,000		
		상 급 침 실 이 용 료	※5,000*30=150,000별도계산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로 개인 부담,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10일 이상 타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한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할 것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할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안내문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의 수가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1.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 2. 인상 율 : 4.54%
- 3. 인상내역

등급	변경 전 (2023년도)			변경 후 (2024년도)		
	1일수가	월이용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20%) (30일 기준)	1일수가	월이용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20%) (30일 기준)
1등급	81,750	2,452,500	490,500	84,240	2,527,200	505,440
2등급	75,840	2,275,200	455,040	78,150	2,344,500	468,900
3등급	71,620	2,148,600	429,720	73,800	2,214,000	442,800
비 고	경감 40% 경감 60% 구분			경감 40% 경감 60% 구분		

4. 식 대

저희 요양원에서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대 및 간식비 부분을 인상하여야 하나, 장기요양급여 인상으로 인한 입소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식대 비용만 500원 인상하여 청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간식대를 1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식	1일	월(30일기준)	1식	1일	월(30일기준)
식 대	3,500	10,500	315,000	3,500	10,500	315,000
간식대	1,000	1,000	30,000	1,500	1,500	45,000
계	-	11,500	345,000	-	12,000	360,000

앞으로도 군포에덴요양원 전 직원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1.

군포에덴요양원 대표 윤인상 배상